

화염방지기 설치 및 재정지원 사업안내



**인화성 액체* 및 가스를
대기로 배출하는 화학설비인
화염방지기** 설치**

- *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
- * 외부 화염이 저장탱크 내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



설치
예시

화염 방지기



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



'25. 10. 17.까지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!

관련
법령

○ 안전보건규칙 제269조(화염방지기의 설치 등)

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·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**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**가 설치되어 있거나,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·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22. 10. 18.>

○ 부칙 제7조(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규칙 시행 당시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·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**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**를 설치하여 **운영 중인 자***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**이내**에 제2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.

* 기존 통기밸브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'25. 10. 17.까지 화염방지기 설치

[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]

1. 지원대상

- 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
 - ※ 제조업, 서비스업, 임업 등 전 업종 신청 가능(단, 건설현장은 제외)
- ②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'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-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→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'중소기업 규모 기준'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
2. 지원금액 및 절차 (한정된 예산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)

- ① 지원금액 : 사업장 당 최대 3,000만원까지(공단 판단금액의 70%, 당해연도 1회에 한함)
- ② 지원절차



3. 클린홈페이지 접속방법

① 홈페이지 (clean.kosha.or.kr) 접속 후 참여사업장 로그인 클릭



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



③ 상단 참여사업장 탭의 "사업신청" 클릭



④ "안전ilter 조성지원 (제조·서비스업)" 클릭



⑤ "고위험 개선" 클릭



⑥ 사업주 동의 등 신청 단계 진행

